

# 학교법인 분진학원

## 2010년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7 인	0 인

1. 일 시 : 2010년 10월 1일 17:00~18: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0년 9월 17일)

2. 장 소 : 반포동 소재 식도원(일식당)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 7인) : 최후연 이사장, 진익호, 민기완, 김윤옥, 이종남, 김명훈, 김재성 이사

- 감사( 0인) :

○ 결석 임원

- 이사( 0인) :

- 감사( 2인) : 강운석, 유동수 감사

4. 회의안건

가.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나.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조건 변경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다. 학교의장 임용에 관한 사항

라. 기타사항.

5. 회의 내용

사무국장 유재호 : 이사님들 모두가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최후연 이사장: 개회인사와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안건 :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이사장 최후연: 제1호 안건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토록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배포된 자료에 따라 개정사유, 조문신설 및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다.

김윤옥 이사: 제98조 (총장등) ③ 대학에는 대내,대외 부총장을 각 1명 씩 둘 수 있다  
로 신설하는데 대내,대외 부총장 2명을 두는 사항인데 대내는 국내, 대외  
는 해외를 이야기 하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대내는 학내를 지칭하고, 대외 교외를 지칭함을 설명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답하다.

- 1 -

간 서 명 란	성 명	진 익 호	민 기 완	김 윤 옥
	서 명	진익호	민기완	김윤옥

최후연 이사장: 이사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김재성 이사: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였는데 7일전에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정관 변경등 사항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2010.9.13일 이사장선임 후 금회 이사회까지 추석연휴 등으로 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안건을 통보 드린 점 양해를 구하다.

참석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이종남 이사: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은 들었으나 조별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이종남 이사 의견에 동의하고 변경할 조문별로 심의하자는 의견을 내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사무국장에게 조문별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토록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정관 제20조를 "3. 감사 1명을 상임감사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한 부분으로 3항을 삭제 하는 것임을 보고하다. *3항 삭제 전의로 임기 변경 (2)*

김재성 이사: 3항 삭제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신설조문인 "제22조의 1 (상근임원)

- ① 법인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다.

이종남 이사: 제22조의 1 이 아니고 제22조의 2로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김재성 이사: 제22조의 1로 하여도 됨을 설명하다.

진익호 이사: 이 조항은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상근임원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③항에 할 수 있다"로 한 것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이종남 이사 의견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이종남 이사: 시간 절약을 위해 심의 조문별로 논의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음 조문을 심의키로 하자는 의견을 내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 제25조의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②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간서명	성명	진익호	박기환	김원우
참서명	서명	진익호	<i>(Handwritten Signature)</i>	<i>(Handwritten Signature)</i>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인, 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을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2인, 중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설명하다.

김재성 이사: 현 정관의 구성은 대학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평의회는 강원관광대학에 있고 분진중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분진중학교 학생은 100여명, 직원은 10여명, 강원관광대학은 교직원이 50여명 학생이 1000여명이상인데 이를 고려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 이므로 선거법에서도 구성에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도록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다.

이종남 이사: 개방이사는 반듯이 두도록 되어있는지 와 왜 금번 이사회에서는 개방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사립학교법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하면 관할청에서 추천토록 되어 있어 현 이사님들중 2명이 관할청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답하다.

진익호 이사: 대학과 중학교의 학생 차이는 있지만 평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수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사립학교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는 대학과 중학교의 학생, 교직원수를 기준으로 3명, 1명으로 한 것이나 이것은 법으로 구성인원수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논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이것에 대한 개정이 긴급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동의하다.

참석이사: 참석이사 전원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제40조 (수익사업의 주소) 사업소의 주소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70번지에 둔다. 을 사업소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1-1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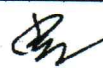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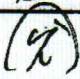
김재성 이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70번지는 어떤 곳인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최초 법인의 주소지 이며 개정하는 것은 수익용 빌딩의 주소로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김재성 이사: 동의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제 45 조 (임 면)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를 "단, 대학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임 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③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드리다.

간서명판	성명	진익호	민기환	김운욱
	서명			



김재성 이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므로 동의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제45조 (임면) ④ 대학의 교학처장, 기획처장 및 행정지원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을 “대학의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 기획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로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드리다.

김재성 이사: 이 조항은 조직에 관한 사항을 먼저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조직에 관한 조항인 제98 (총장 등) ① 전문대학마다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에는 대내, 대외 부총장을 각 1명 씩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 99 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학처, 행정지원처 및 기획처를 두고, 를 ① 대학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행정지원처 및 기획처를 두고로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드리다.

김재성 이사: 지금 사립대학에 부총장을 2명씩 두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대학 보직이 있는데 굳이 부총장을 2명씩 두는 것은 무리 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대학에 총장이 4명이 바뀌고 학교가 부실화 된 것을 조속히 정상화 하기 위하여 대내 부총장은 학내 행정 및 교수들의 논문심사등 공정성을 기하고, 대외 부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동남아권의 학생들의 유치하고 대학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하고자 유연성이 있도록 부총장 2명을 두고자 함을 부연 설명하다.

김명훈 이사: 학생이 1000명, 교수가 3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부총장 2명을 두고 보직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총장에 더 노력해야 하며 국립대학에서도 부총장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작은 학교에 부총장을 2명 두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동남아등 외국 학생을 모집하는 부분에도 많은 부작용도 있음을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국립학교와는 다른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대내, 대외 타이틀이 필요하고 큰 재정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라면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둘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다.

김명훈 이사: 총장이 재량으로 임명하는 안도 제시하다.

김재성 이사: 부총장을 두는 경우는 있는데 2명을 두는 곳은 드문 경우로 보직을 늘리지 말고 하부조직은 그냥 두자는 의견을 내다.

간 서 명 판	성 명	전익호	전기완	김은숙
	서 명	전익호	오	(인)



최후연 이사장: 지금 대학이 긴박한 상황으로 학생모집을 위한 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임을 부연 설명하다.

김재성 이사: 교수나 학생도 적는데 보직을 늘리지 말고 하부조직은 그냥 두자는 의견을 내다.

사무국장 유재호: 현재 하부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교학처에 교무행정,인사,입학,수업등을 통괄하므로 1개처에 업무가 편중되므로 타 대학도 입학처, 학생처, 교무처등으로 업무를 세분하여 학생 모집등에 전력하는 추세임을 설명하다.

김명훈 이사: 하부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괜찮으나 부총장 2명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이종남 이사: 하부조직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부총장은 대내,대외 2명을 수정하는 안을 내다.

또 ① 대학에 교학처, 행정지원처 및 기획처를 두고, 교무과, 학생지원과, 총무과, 관리과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교학처에 교무과나 학생과, 행정지원처에 총무과나 관리과,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거나 해야 하는데 따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 지를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하부조직에서 대표적인 부서를 정의하고 기타 ~~과~~ 대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과를 기술하고 "기타 필요한 부서를 들 수 있다"로 표현한 것임을 설명하다. *2차 수정 진익호*

김명훈 이사: 하부조직에 자세히 기술 할 수는 없고 현재처럼 대부분 표현함을 부연하다.

민기완 이사: 총장이 필요에 따라 부서를 개폐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이 아닌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총장이 부서를 필요에 개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다.

김명훈 이사: 조직변경에 대한 정관 변경은 관할청의 승인아니고 보고사항이 아닌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그렇게 알고 있음을 답하다.

김재성 이사: 부총장을 대내, 대외 2명을 두는 대학은 두문 경우이므로 ③ 대학에는 부총장 1명을 들 수 있다고 수정하는 의견을 내다.

민기완 이사: 김재성 이사 의견에 동의하고, 운영해보고 좋으면 부총장을 추가로 1명 더 늘릴 수도 있음을 설명하다.

김명훈 이사: 김재성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이종남 이사: 제98조 (총장 등) ① 전문대학마다 총장을 둔다.를 개정할 때 "대학에 총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제98조 (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로 개정에 동의하다.

참석이사: 전원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제98조 (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③ 대학에는 부총장 1명을 들 수 있다고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99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행정지원처 및 기획처를 두고로 변경하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는지 의견을 묻다.

- 5

간서명	성명	진익호	민기완	김진우
명란	서명	<i>(Handwritten)</i>	<i>(Handwritten)</i>	<i>(Handwritten)</i>



참석이사: 전원 의견 없음을 답하다.

최후연 이사장: 제98조 (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③ 대학에는 부총장 1명을 둘 수 있다 로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제99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행정지원처 및 기획처로 변경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였음을 알리고 다음 조항을 설명토록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다음 조항은 제45조 2 (전형결과 공개) 조항으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는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코자함을 보고하다.

이종남 이사: 상위법에 따라 삭제할 경우는 개정 란에 상위법 조문을 기록할 것을 지적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상위법 조문을 기록하겠음을 답하다.

최후연 이사장: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 삭제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제45조 2 (전형결과 공개) 조항은 삭제기로 전원 동의하였음을 알리고 다음 조문을 설명토록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제97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과)을 두며, 국(과)장은 참여(부참여) 또는 참사(부참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을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참여(부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제 103 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를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최후연 이사장: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 변경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제97조 (법인사무조직) 및 제 103 조 (하부조직)의 부서명칭변경 전원 동의하였음을 알리고 정관변경(안)에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이종남 이사: 논의하여 확정된 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정리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논의된 내용 중 원안에서 삭제할 부분과 수정한 부분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다.

최후연 이사장: 논의된 정관변경(안)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재성 이사: 동의하다.

김윤옥 이사: 제청하다.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정관변경(안)이 일부 조항 삭제 및 수정하여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 하다.

간서명	성명	진익로	인기원	김윤옥
명란	서명	진익로	인기원	김윤옥



**<제2호 안건 : 서인천대학(교지) 설립인가 조건 변경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최후연 설립자 출연) >**

이사장 최후연: 제2호 안건 서인천대학(교지) 설립인가 조건 변경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설명토록 하다.

최후연 이사장: 설립인가사항에 따라 교지를 출연(법인명으로 동기) 하였으니 일부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교지에 편입 등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김윤옥 이사: 개정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 설명토록 요청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배포된 자료에 따라

인가조건은 1. 교사 : 개교예정일 8개월전 까지 확보 사항으로 입학정원 320명(최소 1,000명)기준으로 설립기준은 8,400㎡이며, 이행은 교사 8,984㎡(2010.03월 등기완료) 준공(최후연 설립자 출연)하여 이행 완료된 사항임

2. 교지 인가조건은 103,703㎡ 확보이고 설립기준은 입학정원 320명(최소1,000명)기준으로 설립기준은 8,400㎡이며, 교지 이행은 (103,703㎡ 1998.9.14일 최후연 설립자 출연) 현재 97,704㎡ 법인등기완료(시설 결정 면적: 25,396㎡ : 기준대비 302%확보)

○ 미 등기부분(5,999㎡)은 - 농지: 5,087㎡(농지법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등기이전 불가), - 도로용지: 288㎡(도시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 용지로 기부채납), - 등록전환: 624㎡(도시계획승인 시 측량결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소) 임을 설명하고

3. 수익용재산 인가조건은 2,450백만원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2,551백만원 (1998.9.14 최후연 설립자 출연)으로 조건대비 104%확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변경사유는**

- 현재 설립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2010.05.17일 서인천대학설립인가 현장실사까지 진행되었음.
- 미등기 교지(5,087㎡)는 농지법에 의해 등기 할 수 없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 교지변경 협의 완료된 사항임.
- 교지에 대한 인가조건 변경 승인 신청하여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코자 함을 보고하다.

최후연 이사장: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김명훈 이사: 교지출연 약속사항인 103,703㎡를 농지법등에 따라 미 등기된 5,999㎡를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그렇다 고 답하다.

김재성 이사: 등기는 누구의 명으로 되었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현재 97,704㎡ 법인명으로 등기완료 되었으나 현재 5,087㎡는 미등기 상태임을 답하다.

간서명판	성명	진익호	반기영	김윤옥
	서명	진재호	유재호	(인)



이종남 이사: 농지라도 법인명으로 등기하면 되지 않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현재는 농지법과 검단신도시개발에 따라 토지거래가 중지되어 등기기  
 전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변경신청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미등기된 부분은 추후라도 대학에 출연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묻다.  
 최후연 이사장: 당연히 대학에 출연키로 약속하였음을 답하다.  
 최후연 이사장: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참석이사: 의견 없음을 답하다.  
 최후연 이사장: 서인천대학(교지) 설립인가 조건 변경 승인 요청(안)에 동의하는지 묻다.  
 김재성 이사: 동의하다.  
 김윤옥 이사: 재청하다.  
 참석이사: 이종남, 김명훈, 민기완, 진익호이사도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서인천대학(교지) 설립인가 조건 변경 승인 요청(안)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  
 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 하다.

<제3호 안건 : 학교의장 임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이사장 최후연: 제2호 안건 학교의 장 임용에 관한 사항 을 상정하고 사무국장에게 관련  
 범규를 설명토록 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배포된 자료에 따라 학교의 장 임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이사장님께서 추천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을 보고하다.

최후연 이사장: 저의 처이고 강원관광대학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후보로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럽지만 추천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낙후된 지역에 1992년  
 에 대학 설립인가를 받고 1995년에 개교를 하였으며, 1995 ~ 2000년 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학교발전에 노력한바 있으며, 그동안 학장이  
 5명, 이사장이 4명이 바뀌었지만 학생 3000명에서 지금은 1000명인 부실  
 대학으로 퇴보하였으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본인 설립한 학교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학교를 구할 분으로 원재희 전 학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이사장과 함께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다.

김윤옥 이사: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답하다.

김재성 이사: 정관변경(안)에 대하여는 이사님들의 동의에 따라 심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학교의 장 부분은 구체적인 통보가(후보자의 이력등)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지역 친구들이나 교수 몇 명  
 으로부터 학교의 장 임용에 대하여 투명성 있는 선임을 주장하는등 이의  
 제기가 있는 상태이며, 사립학교법 제53조 ③항의 취지는 여러조건을 들  
 어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됨을 설명하다.

민기완 이사: 법률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김재성이사의 일방적인  
 해석일수도 있다.

진익호 이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 전 학장인 사모님을 총장을 추천한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결정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이해하고 원재희 전 학장을 총장  
 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다.

민기완 이사: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학교발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분으로 원재희 전 학장의 추천에 재청하다.

간 서 명 란	성 명	진익호	민기완	김윤옥
	서 명	진익호	민	김



김재성 이사: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며 다만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과 형사판결은 유죄로 판결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기간이 경과되어 결격사유는 없으나 이사 2/3의 찬성으로 동의되더라도 관할청의 승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다.

민기완 이사: 법률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김재성 이사의 일방적인 해석을 가지고 판단할수 없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법의 취지에 모든 결격사유는 해소된 것이므로 학교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요청하다.

김윤옥 이사: 지금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논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최종 판결은 ~~확정~~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의견을 달라고 부탁하다. *5/24 18:30*

김재성 이사: 총장으로 결격사유는 없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교육자로는 중형임을 설명하고, 교과부에서도 비리의 당사자는 복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당사자들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미비했다고 보여지며 일방적으로 내가 학장으로 내려가면 두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임을 설명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역단체 및 기관장들과 협의도 있었고 또한 학교발전을 위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역의견이 모여져 교과부에 건의도 한 것이고, 또한 교직원들에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학교발전에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바 있음을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지금 판결을 논할 사항은 아니며 총장 임용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인데 이미 결격사유는 없으므로 다만 설립자의 배우자인 원재희 전 학장이 총장후보로 적합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이사님들이 납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열악한 지역 환경 속에서 수년간 학교발전을 이룬 점과 다시 개교한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책임자임을 설명하다.

김윤옥 이사: 지금 학교를 다시 개교한다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은 원재희 전 학장이 책임자임을 설명하다.

김재성 이사: 아직도 지역 및 교수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최후연 이사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빨리 정상화하여 지역과 학교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지역 언론과 기관장들 그리고 지역단체 40여 곳에서 설명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따라 공청회 아닌 공청회를 가진 결과 그동안의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이해하고 정상화에 동의한바 있으며 교과부에 ~~각~~ 각 기관단체에서 정상화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청회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설립자가 복귀하면 보복이 두렵다며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요청하였으나 참석하지도 않았음을 설명하다. *1/24 18:30*

김재성 이사: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말했던 사람들도 저를 찾아와서는 원재희 전 학장님의 복귀한다는 입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간서명판	성명	진익로	민기완	김윤옥
	서명	<i>진익로</i>	<i>민기완</i>	<i>김윤옥</i>







이종남 이사: 지역의 여론은 참고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인데 지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설명하다.

최후연 이사장: 과거는 잊어버리고 발전을 위해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드리다.

김재성 이사: 관련 법규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사립학교법 제17조 ③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통보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종남 이사: 사립학교에서는 대부분 누구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고 "학교의 장 임용에 관한 건"으로 대부분 통보하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법규로 보면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된 것으로 보여 지며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내다.

김재성 이사: 우선 안전이 통보된 것이 걱정인 것인지 의견을 묻지는 의견을 내다.

이종남 이사: 통보된 3건의 안전 통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지 유무를 우선 묻도록 하자는 의견과 안전통지에 하자 없음에 동의하다.

김명훈 이사: 통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묻다.

사무국장 유재호: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제17조 ③항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통보하였으므로 통지에는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사님들의 안전 통보의 대하여 걱정 하였는지에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묻다.

참석이사: 안전 통보의 대하여 걱정 하였는지 의견을 묻는 것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안전 통보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묻다.

김재성 이사: 동의하다.

참석이사: 민기완, 진익호, 김명훈이사도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안전 통보의 대하여 걱정 하다는 것에 전원 찬성 의결하다.

**<총장 선임>**

최후연 이사장: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최후연 이사장: 김윤옥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김윤옥 이사: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민기완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민기완 이사: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진익호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진익호 이사: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이종남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이종남 이사: 대안이 없다고 하므로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동의하다.

김재성 이사: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반대하다.

간서명	성명	진익호	민기완	김윤옥
명란	서명	진익호	민기완	김윤옥



간	서명	이종남	김명훈	김재성
서명	서명	이종남	김명훈	김재성

을 내다.

최후연 이사장: 원재희 전 학장의 총장 선임에 찬성 5명, 반대 1, 보류 1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다.

<기타사항>

최후연 이사장: 간 서명 대표를 선출에 대하여 설명토록하다.

사무국장 유재호: 전 이사회에서는 김명훈, 이종남, 김재성 이사님이 서명하셨음을 설명하고 금번에는 김윤옥, 진익호, 민기완 이사님이 서명하는 것이 어떤지 이사님들의 의견을 구하다.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다.

최후연 이사장: 간 서명 대표로 김윤옥, 진익호, 민기완 이사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 선언

최후연 이사장 : 폐회를 선언하다.(2010.10.01 20:20)

2010. 10. 01.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 최후연 (서명)

이 사

이 사 김명훈 (서명)

이 사 김재성 (서명)

이 사 진익호 (서명)

이 사 민기완 (서명)

이 사 김윤옥 (서명)  
(이상 참석 7명)

간	서명	진익호	민기완	김윤옥
서명	서명	김재성	(서명)	(서명)